

#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'20. 12. 22. 공포, '21. 6. 23. 시행)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, 조례에서 인용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(안 제2조).

1) 민간위원 수: (현행) 7명 → (개정) 9명

2) 총 위원 수 : (현행) 11명 → (개정) 13명

나.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'법관'을 '판사·검사·변호사'로 정비함(안 제2조제1항제1호).

다. 조례 개정사항을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('21. 6. 23. 시행)에 맞추어 시행함(안 부칙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1. 28.~2. 17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1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7명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”를 “9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”로, “제2조 에”를 “제2조에”로, “추천한자”를 “추천한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공직자 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<u>11명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7명의</u>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<u>제2조</u>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<u>추천한자</u>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위촉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3명</u>-----.</p> <p>1. <u>9명의</u>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, <u>교육자</u> ----- <u>제2조</u>에 ----- -- <u>추천한자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도록 하여 위원회 개최 시 참석·심사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(안 제2조)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함.

- ▶ 조례(안)으로 발생하는 비용 총액(연간) : 2,500천원
  - 연간 수당 : 250,000원×2명×5회 = 2,500천원
- ※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2021년 운영일정에 따라 연 5회로 적용하였으며, 2시간 이상 개최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(최대)로 적용하였음.

### 4. 작성자

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홍제희(02-2133-3161)